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 구분	채용분야	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총계	양성	남성	여성	
			52	3	44	5	
공개경쟁 채용  이하 <b>'공채'</b>	소 방	소방사	27	-	25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5	-	4	1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 채용  이하 <b>'경채'</b>	구 급	소방사	10	-	8	2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영어(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화 학	소방사	2	-	2	-	
	정보통신	소방사	2	2	-	-	
	의무소방	소방사	5	-	5	-	
	법 무	소방경	1	1	-	-	

## II 시험일정

구분	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 발표일
원서접수	2. 10.(월) 09:00 ~ 2. 14.(금) 18:00 ※ 취소기간 : 2. 10.(월) 09:00 ~ 2. 19.(수) 18:00		
필기시험	3. 9.(월)	3. 28.(토)	4. 13.(월)
체력시험	4. 13.(월)	4. 21.(화)	5. 12.(화)
서류전형		4. 21.(화) ~ 5. 8.(금)	
신체검사	5. 12.(화)	5. 13.(수) ~ 5. 15.(금)	5. 22.(금)
인적성검사		5. 15.(금)	
면접시험	5. 22.(금)	6. 3.(수)	6. 15.(월)

※ 상기일정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매 단계별 시험공고문 참조)

- 모든 분야는 응시원서 접수기간(2. 10. ~ 2. 14.)에만 접수할 수 있음.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법무분야(소방경)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인·적성 검사), 면접시험
  - 법무분야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신체(인적성) 검사·면접시험은 위의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III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공통) ※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응시 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용구분	계 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2. 12. 31.
경채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0. 12. 31.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도 포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채	<p>아래의 1번과 2번의 <b>요건 중 하나</b>를 충족하여야 함(개인별 주민등록초본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b>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li> <li>2. <b>시험공고일* 이전까지</b>,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li> </ul> </li> </ol> <p><b>* 2021년도 채용시험부터 시험공고일 기준이 아닌 채용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 예정</b></p> <p>※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li> </ul> <p>※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p>
경채	<b>거주지 제한 없음</b>

□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법무분야 제외)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 보유 기준일은 최초 필기시험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며, 합격자 결정을 취소함.
- 경력경쟁채용(분야별)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소방관련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li> <li>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li> <li>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li> </ul>
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자</li> <li>*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구급 실무경력 인정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li> <li>*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li> <li>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한 경력</li> <li>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li> <li>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li> <li>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li> <li>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li> <li>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li> </ol> </div>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p><b>화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li> <li>1. 화학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화학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자격증 범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5 430 1460 607"> <tr> <td>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td> </tr> <tr> <td>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5 694 1460 904"> <tr> <td>○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td> </tr> <tr> <td>○ 인정 실무경력 : ①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td> </tr> <tr> <td>※ 이와 업무의 전문성이 유사한 부서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td> </tr> </table> <li>2.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화학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10&gt;로 인정</li> </ul> </li> </li></ul>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①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이와 업무의 전문성이 유사한 부서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①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설계 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이와 업무의 전문성이 유사한 부서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p><b>정보통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통신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자격증 범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5 1207 1460 1420">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r> <td>산업기사</td> <td>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5 1507 1460 1718"> <tr> <td>○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td> </tr> <tr> <td>○ 인정 실무경력 : ① S/W개발부서 및 D/B설계·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② 정보보안 부서에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통제</td> </tr> <tr> <td>※ 이와 업무의 전문성이 유사한 부서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td> </tr> </table> </li> </ul>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① S/W개발부서 및 D/B설계·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② 정보보안 부서에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통제	※ 이와 업무의 전문성이 유사한 부서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근무대상(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 인정 실무경력 : ① S/W개발부서 및 D/B설계·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② 정보보안 부서에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운영·통제												
※ 이와 업무의 전문성이 유사한 부서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p><b>의무소방 전역(예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li> </ul> </li> </ul>											
<p><b>법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li> <li>1.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li> <li>2.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li> </ul>											

## IV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 ○ 공채, 경채 모든 분야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이용
  -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 1522-0660)
- 접수기간 : 2. 10.(월) 09:00 ~ 2. 14.(금) 18:00, 5일간
  - ※ 24시간 운영하되, 접수 마지막일은 18시까지 운영
  - ※ 접수취소기간 : 2. 10.(월) ~ 2. 19.(수)

### ○ 응시수수료 : 소방경 7,000원 / 소방사 5,000원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응시수수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 응시원서 사진 : 3개월 이내 촬영,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휴대폰 셀프카메라 및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표기**해야 합니다.

# V

## 가산특전 ※ 자격(면허)증 소지자 가산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 기준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야 함 (보건복지부 ☎ 044-202-3258)



-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 ~ 5%)을 가산함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붙임 1)

분야	가점비율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는 가산점 합산적용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에 모두 해당될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VI

##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채) 100분<10:00 ~ 11:40>, (경채) 60분<10:00 ~ 11:00>
- 시험과목 : [붙임 2] ※ 시험편철 순서 [붙임 3]

공채(5과목)	경채(3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일반분야	□ 국어, 소방학개론, 생활영어
	소방분야 (소방관련학과)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붙임 4]
소방관계법규	공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약칭)(법, 시행령)
사 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

○ 공채 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붙임 5]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채(여성), 소방관련학과(여성), 구급(여성), 화학,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3배수**

○ 시험문제 출제 및 공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

- 공개일시 : 3. 28.(토) 16:00 ※ 필기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공채, 경채)

- 공개장소 : 중앙소방학교(www.nfsa.go.kr) 및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필기시험 출제문제 이의제기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3. 28.(토) 16:00 ~ 3. 29.(일) 24:00

- 신청방법 :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 신청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붙임 6]
-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가답안 이의제기 등 질의  
↳ 출제문제 이의제기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접수하며, 전화문의 및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제기 신청 불가
- 최종 확정답안 게시 : 4. 2.(목) 예정 /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불합격자에 한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http://www.sejong.go.kr)) 「행복도시세종-세종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 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www.sejong.go.kr/fire.do](http://www.sejong.go.kr/fire.do)) 「열린광장-시험정보」 란에 공고함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 4) / [붙임 7]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득점** 시 합격자로 결정

○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안내문 [붙임 8]”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예정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9] 참조,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 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 법무분야 포함한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서류전형 안내 공고문 참조

-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당일(4.21.) 직접 제출
- 법무분야 응시자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4.21.까지)

※ 법무분야 서류접수처 : (우편번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보람동)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제출시 2020.4.21.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서류제출일 기준)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공통사항	분야		개별사항
① 신원진술서 3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부 ③ 기본증명서(상세) 2부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⑦ 자격증 사본 1부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⑨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정부24) 1부  <b>【기타】 해당자만</b> ○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 1부(전역예정일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의사상자 등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채	소방	① 공통사항
		소방 관련 학과	① 졸업증명서(졸업자) 1부 ※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 : 성적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② 공통사항 포함
	경채	구급 · 화학 · 정보 통신	① 경력증명서 1부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③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국세청홈페이지 활용 ④ (화학)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붙임 10] ⑤ 공통사항 포함
		의무 소방	① 의무소방원 전역 확인서 또는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1부 [붙임 11] ② 공통사항 포함
		법무	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포함)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 1부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③ 공통사항 포함(해당사항에 한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공통자격(1종 보통 또는 대형운전면허) 및 경력채용분야별(구급·화학·정보통신·법무) 면허·자격증의 보유 기준일 : 최초필기시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함
-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www.ei.go.kr 발급),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해당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 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별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 제출 시 반드시 경력확인부서, 발급확인자 날인, 직통전화번호, FAX번호 포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 시 시험실시기관이 지정·안내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성 검사 시 제출(검사 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별표3에 의함 [붙임 12]

- 인·적성검사 방법 :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소집 후 질문지 작성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적성 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법무분야 제외)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법무분야는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성적(100%)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VII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행복도시세종-세종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www.sejong.go.kr/fire.do) 「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공고되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 각 시험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등)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하거나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이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으로 정정한 경우(수정테이프는 사용가능)
  -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거주지 제한(공채)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준일을 기존 시험공고일에서 2021년도 채용시험부터는 채용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8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http://www.sejong.go.kr)) 「행복도시세종-세종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http://119.sejong.go.kr)) 「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가점비율 분야	5%	3%	1%
<b>①</b> 자격증 (면허증)	소방 관 려 국 가 기 술 자 격	소 방 관 려 국 가 기 술 자 격	소 방 관 려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술 사 · 기 능 장	중 기 사	중 산 업 기 사 · 기 능 사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학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3D프린터개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3D프린터 운용,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잠수기능장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대형견인차(舊 제1종 특수트레이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 2급
<b>②</b>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2>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1. 일반분야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사·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소방분야

구분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비고

-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 외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 위 표 제1호에서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위 표 제2호에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 위 표 제2호에서 항공분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하고, 소방분야는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편철순서**

편철순서

편철 순서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영어	④ 소방학 개론	⑤ 행정법 총론	⑥ 소방관 계법규	⑦ 사회	⑧ 과학	⑨ 수학
----------	---------	----------	---------	----------------	----------------	-----------------	---------	---------	---------

필수과목(3과목)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2과목)

유형	제1선택	제2선택
1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	소방학개론	사회
4	소방학개론	과학
5	소방학개론	수학
6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7	행정법총론	사회
8	행정법총론	과학
9	행정법총론	수학
10	소방관계법규	사회
11	소방관계법규	과학
12	소방관계법규	수학
13	사회	과학
14	사회	수학
15	과학	수학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편철순서**

편철순서

편철순서	① 국어	② 생활영어	③ 소방학개론	④ 소방관계법규	⑤ 영어
------	---------	-----------	------------	-------------	---------

시험과목

채용예정계급	채용분야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소방사	구조, 구급, 의무소방원전역(예정) 등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전공학과 졸업(예정)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교 소방장	소방교, 소방장 경채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붙임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발전 과정</li> <li>-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li> <li>-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li> <li>-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li> <li>-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li> </ul>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li> <li>-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li>- 위험물 안전관리</li> <li>-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li> <li>-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li> </ul>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특징과 유형</li> <li>-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li> </ul>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li> <li>- 긴급구조</li> <li>-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li> </ul>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li> <li>- 연소의 조건 및 형태</li> <li>- 발화의 조건 및 과정</li> </ul>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의 정의</li> <li>- 연소 가스</li> <li>-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 <li>-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 </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의 조건</li> <li>-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 폭연과 폭굉</li> <li>- 가스·분진·분해 폭발</li> <li>-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정의</li> <li>-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li> </ul>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li> <li>-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li> </ul>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li> <li>-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li> </ul>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li> <li>-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li> </ul>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li> <li>-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족매 효과)별 소화 수단</li> </ul>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li> <li>-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li> <li>-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li> <li>-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li> <li>-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li> </ul>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li> <li>-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li> <li>-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li> <li>-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li> <li>-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li> <li>※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li> </ul>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6>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이의제기	(성명) _____ (응시번호) _____
연 락 처	• 휴대전화 : _____ • 이 메 일 : _____
응시분야	• 응시시도 : _____ • 응시분야 :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질의과목	• 해당과목 : _____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p>&lt;출제문제&gt;</p>          <p>&lt;사유 및 관련근거&gt;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p>          <p>&lt;응시자 의견&gt;</p>	

※ 경로 : 119고시 홈페이지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붙임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b>약 력</b>  <b>(k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약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약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b>배 근 력</b>  <b>(k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배근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b>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b>  <b>(c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li> <li>○ 측정 단위 : cm</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li> <li>-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li> <li>-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li> <li>-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li> <li>-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li> <li>-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li> <li>※ <b>유의사항</b>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li> </ul>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li> <li>○ 측정 기록 : cm</li> <li>○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 측정 기록 : 회</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ul>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li> <li>-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li> <li>-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li> <li>- 녹음 CD : 별도</li> </ul> </li> <li>○ 측정 기록 : 단위(회)</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li> <li>-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li> <li>-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li> <li>-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li> <li>-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li> </ul> </li> </ul>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

20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 11>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인 적 사 항	1. 소속			
	2. 계급		3. 군 번	
	4. 성명	한 글:	5. 주민등록 번호	
		한 자:		
6. 주소				
복 무 사 항	7. 신분구분	의무소방 제 기	8. 복무 기간	20 . . . 임용 20 . . . 퇴직 퇴직예정 면 직
	9. 복무중 임무			
	10. 퇴 직 년월일	20 . . . 퇴직·퇴직예정·면직		
	11. 퇴 직 구 분	만기전역, 복무단축전역, 의가사전역, 전임해제, 당연퇴직, 직원면직		
12. 용도				
<p>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위 사실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소방기관의 장</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원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